제432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71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2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개관 : 제정안의 취지·구성 및 주요내용 ····· 10

Ⅳ. 총괄적 검토 ····· 11

Ⅴ.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 18

1. 총칙 ····· 18
2. 통합특별시의 설치 ····· 23
3.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30
4.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 ····· 35
5.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 39
6. 광역생활권의 지정 및 운영 ····· 43
7. 지방의회 ····· 46
8. 자치행정 ····· 52
9. 자치재정 ····· 63
10.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 72
11. 자치감사 ····· 93
12. 경제과학수도 개발 계획 ····· 101
13. 개발사업의 시행 ····· 107
14.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 129
15.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조성 ····· 141
16.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 155

1) 첨단 신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관련 특례 ····· 155

2) 드론·지능정보화·SW·소재부품장비 특화 구역 지정 등 특례 ····· 16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 166
4) 신규·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벤처·창업·산학협력 관련 특례 ···· 173
5)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례 ····· 178
6) 기업이전·외국인투자 및 금융지원에 관한 특례 ····· 180
17. 전통산업 진흥 및 해양 중심지 조성 ····· 186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규제개선에 관한 특례 ····· 186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인 지원 및 산지전용 관련 권한이양 특례 등 ····· 190
3) 간척지 이용 및 수산업 관련 특례 ····· 200
4) 환황해 해양자원 활용 및 도서개발·해양레저관광 특례 ····· 207
18. 공간의 계획 및 이용 ····· 213
1) 국토·개발제한구역·건축 행정 특례 ····· 213
2) 도시개발·택지개발·주택정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특례 ···· 220
3) 지명,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 231
4) 광역교통 및 도로·철도 사업 관련 특례 ····· 239
5) 민간자본유치·투자촉진 및 도시교통 운영 특례 ····· 244
19.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 256
1) 저출생·돌봄·청년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특례 ····· 256
2)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 관련 특례 ····· 268
3) 박물관·체육시설·카지노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광·문화 분야 특례 ····· 275
20. 생태자원의 합리적 활용 ····· 286
21.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 305
22. 보칙 ····· 313
23. 벌칙 ····· 316

Ⅰ. 제안경위

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가.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4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0. 2.

다. 회부연월일 : 2025. 10. 10.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62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2. 3.

다. 회부연월일 : 2026. 2. 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재정위기, 지방 소멸 등 다양한 국가 위기사태에 직면해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과

기능개혁을 통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적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1989년 대전광역시의 직할시(直轄市) 승격으로 분리되었으나 생활권, 경제권, 교통망이 밀접히 연결된 통합권역으로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대전충남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전충남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지원하는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

한 조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자치권의 강화

1) 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안 제24조).

2) 대전충남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총 4인으로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등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27조).

3) 대전충남특별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하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30조).

4)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정착·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 지원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9조).

5)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특별시가 징수하는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함(안 제42조).

마. 경제과학수도 조성

1) 대전충남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

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봄(안 제84조 및 제85조).

2)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93조).

3) 대전충남특별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안 제120조 및 제121조).

4)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시, 대전충남특별시의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5대 산업육성 등을 포함하고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32조).

5)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2조).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 대전충남특별시 광역철도 건설·개

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0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219조).

바. 대전충남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1)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대전충남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에 지원함(안 제239조).

2)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0조).

3)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고, 대전충남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53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와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 및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가 성장을 견인할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통해 주민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면·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충남대전통

합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지원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6조).

다. 자치권의 강화

1)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4인으로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등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38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하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3) 국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1조).

라.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1)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

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봄(안 제78조 및 제79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86조).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9조).

4) 충남대전통합특별시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120조).

5) 국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8조).

6)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고, 국가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 국방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67조 및 제168조).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사업의

시행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농업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0조).

마.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1) 국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2조).

2)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0조).

3)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71조).

4)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우대될 수 있음(안 제296조 및 제302조).

Ⅲ. 개관 : 제정안의 취지·구성 및 주요내용

제정안들은 기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 또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함)를 설치하고 관련된 행·재정적 특례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성일종의원안은 본칙 296개 조문과 부칙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병도의원안은 본칙 314개 조문과 부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부의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② 통합특별시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③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④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자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자치행정·자치재정·교육자치·자치경찰 및 감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⑥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며,

⑦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료기관·전통시장 등에

관한 특례와 관광·문화 및 생태자원·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⑧ 공공기관의 협조,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Ⅳ. 총괄적 검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등에 관한 일련의 체제[1]를 개편하는 것을 말함.

이 중 행정통합은 둘 이상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행정 운영 전반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의미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는 위로부터의 방식(Top-Down)과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와 요구에 따라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Bottom-Up)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위로부터의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가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신속한 행정체제 개편을 달성할 수 있다는 효율성 측면의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주민의사의 반영, 지역의 수용성 확보 등 민주적 측면에서 한계[2]를 가지고 있음.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2) 디트NEWS24, 대전 시민사회 "정부·정치권 탑다운식 행정통합, 비민주적", 2025. 12.19. 유솔아, 노컷뉴스 통합법 발의했지만, 벌써부터 잡음…"숙의 부실", "선거용 술수", 2026.1.30. 고형석 등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통합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95, 39개 도·농복합시 출범, '98, 통합여수시 출범, '10 통합창원시 출범 및 '14 통합청주시 출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적은 없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설치를 통한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3]의 설치를 통한 광역사무 수행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이루어졌음[4].

먼저, 특별자치시·도의 설치 사례 및 과정을 살펴보면, 2006. 7. 1.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을 통한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자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며, 이후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음.

특별자치시·도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범하였으나,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이 필요한데,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5]이고, 특별자치도의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조

---

3)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미래를 위한 방향과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2024.6.

직·인사권의 자율성 확대, 중앙정부권한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6],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7].

다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적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현재 충청권 4개 시·도가 설치한 '충청광역연합'이 유일하게 설치·운영('24.12. 출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도의 초기 도입단계로서의 한계를 보임.

정부는 광역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분산하고,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의 추진체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고[8],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추진단을 설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나섰음[9]. 그러나 2025년 12월 대통령의 행정통합에 관한 발언[10] 이후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으로 추진방향이 변경되어 정부지원단을 설치하고 행정통합지원대책[11]을 발표하였음.

---

5)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 4.

6) 「맞춤형 자치모델,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 1.

7) 22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건, 「세종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8)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지방시대위원회, 2025.9.

9) 세계일보,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로 통합 지역소멸위기 공동대응 나선다, 2025.8.22. 한현묵. 경향신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선언... 이 정부 '5극3특' 물꼬 트나, 2025.8.26., 고귀한·강현석 등

10)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2025.12.5.

구체적으로 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충남 간 통합, 광주·전남 간 통합, 대구·경북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함으로써 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초광역화된 생활·경제 구조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인사·재정 등 특례와 각종 산업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 간, 지역 상호 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12].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26. 6. 3.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에 부여할 각종 행·재정 특례 및 권한이양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

11)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모델에 대해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 등을 활용한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통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및 각종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음.

12) 연합뉴스, 충남지사·대전시장 "민주당 통합법 의무 아닌 재량 수준…실망", 2026.2.2. 박주영, 연합뉴스, "행정통합특별법, 교육자치 무력화" 교원단체 잇따라 반대성명, 2026. 2. 2. 강수환 등, 대전일보, 與 대전·충남 통합법안 발의에… 野·시민단체 반발 등 '진통', 2026.2.1. 정민지

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에 일정 제약이 있음.

또한, 광역 행정통합을 목적으로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법안은 부단체장의 수를 종전 광역시·도 부단체장 수를 합친 것과 같은 4명[13]으로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며, 인력 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등[14] 규모의 경제 및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1특별시, 3통합특별시, 3특별자치도, 3광역시, 1특별자치시, 3도 체제가 성립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특례 등에 따른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통합특별시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하여 행정통합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는 특례는 조직·인사 등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와 재정특례 및 각종 산업권한 등 각종 중앙부처 소관 권

13) 서울특별시('25. 12. 기준 인구 929만 9,548명)와 경기도('25.12. 기준 인구 1,373만 135명)가 3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25.12. 인구 3,577,482명), 광주·전남('25.12. 인구 3,171,148명), 대구·경북('25.12. 인구4,859,558명) 등에 4명의 부시장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통합특별시의 4명의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설치됨.

14) 참고로, 발의된 법안은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한[15]에 대한 특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행정 측면의 특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특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율성 제고 가능성과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소관 권한 사항에 관한 특례는 각종 행정권한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의 적절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총 21개부처(기획처·재경부·국토부·행안부·과기부·교육부·문체부·산업부·기후부·산림청·농림부·해수부·복지부·국방부·중기부·노동부·국조실·경찰청·법무부·보훈부·금융위)의 권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Ⅴ.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총칙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대전충남특별시를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여 대한민국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기업활동의 자유 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2. “광역생활권”이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생활 범위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충청권 광역통합을 위한 노력)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5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대전충남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통합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통합특별시와 관할구역 내 시·군·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전충남특별시의 책무)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특별시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대전충남특별시의 조례(이하 “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충남대전통합특별시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대전충남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③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는 관할구역 내 시·군·구의 상생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권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대전충남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장(이하 “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특별시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통합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안들의 총칙은 입법목적, 정의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특별시 설치의 기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및 “광역생활권”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내 시·

군·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및 권한배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은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 및 유사 입법례의 총칙규정 비교>

	성일종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제주 특별법	전북 특별법	강원 특별법
목적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대전충남특별시를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여 **대한민국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일종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제주 특별법	전북 특별법	강원 특별법
적용 범위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국가의 책무	① 입법·행정조치 ② 방안·시책마련 ③ 기존 행·재정 이익 지속적 부여 ④ 세목이양·국세이양 등 지원 ⑤ 자치권 확대 기반마련	① 입법·행정조치 ② 방안·시책마련 ③ 기존 행·재정 이익 지속적 부여 ④ 세목이양·국세이양 등 지원 ⑤ 자치권 확대 기반마련 ⑥통합특별시 및 시·군·구 상생발전 위한 행·재정 지원	① 입법·행정조치 ② 방안·시책마련 ③ 기존 행·재정 이익 지속적 부여 ④ 세목이양·국세이양 등 지원	① 입법·행정조치 ② 방안·시책마련 ③ 행·재정 지원 방안마련 ④ 기존 행·재정 이익 지속적 부여 ⑤ 규제완화 노력	① 입법·행정조치 ② 방안·시책마련 ③ 행·재정 지원 방안마련 ④ 기존 행·재정 이익 지속적 부여 ⑤ 규제완화 노력
특별시의 책무	① 국가정책 협력 ② 조례제정 등 조치 ③ 성과목표 관련 협약체결	① 국가정책 협력 ② 조례제정 등 조치 ③ 성과목표 관련 협약체결 ④ 시·군·구와 행·재정적 권한 배분	① 국가정책 협력 ② 조례제정 등 조치 ③ 성과목표 관련 협약체결	① 국가정책 협력 ② 조례제정 등 조치 ③ 성과목표 관련 협약체결	① 국가정책 협력 ② 조례제정 등 조치 ③ 성과목표 관련 협약체결
타법률과의 관계	①제정안 우선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 적용 ②중앙행정기관장 권한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한 경우 다른 법령 적용시 중앙행정기관장을 특별시장으로 간주	①제정안 우선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 적용 ②중앙행정기관장 권한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한 경우 다른 법령 적용시 중앙행정기관장을 특별시장으로 간주	①제정안 우선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 적용 ②중앙행정기관장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한 경우 다른 법령 적용시 중앙행정기관장을 도지사로 간주	①제정안 우선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 적용 ②중앙행정기관장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한 경우 다른 법령 적용시 중앙행정기관장을 도지사로 간주	①제정안 우선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 적용 ②중앙행정기관장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한 경우 다른 법령 적용시 중앙행정기관장을 도지사로 간주

2. 통합특별시의 설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6조(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대전충남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칭: 대전충남 특별시 / 관할구역: 종전의 대전광역시 일원 및 충청남도 일원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대전충남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사와 충청남도 청사를 활용한다.	**제8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명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 관할구역: 종전의 충청남도 일원 및 대전광역시 일원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충청남도 청사와 대전광역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전충남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대전충남특별시교육감(이하 “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통합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대전충남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대전충남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제10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군·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시·군·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충청남도 관할이었던 시·군의 경우: 기존 명칭 앞에 충남을 관할구역 명칭으로 부기 2. 종전의 대전광역시 관할이었던 자치구의 경우: 기존 명칭 앞에 대전을 관할구역 명칭으로 부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3. 이외 명칭의 세부적인 사용범위와 공문서 등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조례로 규정
③ 대전충남특별시는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대전충남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광역시의회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대전충남특별시의회(이하 “특별시의회”라 한다)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광역시·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대전충남특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그 관할 자치구 및 충청남도와 그 관할 시군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또한,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1조(통합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또는 광역시의회의원·도의회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광역시·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통합특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 및 대전광역시와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고,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법령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 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 중 하나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⑨ 다른 법령에서 소방본부·소방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소방청·통합특별시소방청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정안들은 정부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2024년 기준 수도권 거주 인구는 2,604만 7,52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1만 7,221명)의 50.8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GRDP의 52.5%이며, 일자리는 전체의 58.5%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2022년 주요 국가 간 수도권 집중도 비교>

(단위: %)

국가	인구	GRDP	일자리
한국	50.8	52.5	58.5
일본	29.5	24.3	30.8*
프랑스	18.2	31.3	23.5
영국	13.1	23.1	14.4**
이탈리아	9.7	10.9	40
독일	4.5	4.6	4.6
미국	4.7	5.1	4.9

※자료: 입법조사처
* 2021년 기준
** 2024년기준

제정안과 같이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인구 357만 명, GRDP 196조 원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메가시티가 형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소멸 극복 및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2025년 시·도별 인구 및 GRDP 규모>

(단위: 명, 억원)

시·도	인구	시·도	GRDP
경기	13,730,135	경기	593,556
서울	9,299,548	서울	547,618
통합특별시	3,577,482 대전: 1,440,729 충남: 2,136,753	통합 특별시	196,649 (대전:54,011 충남:142,638)
부산	3,241,600	경남	137,665
경남	3,207,383	경북	127,467
인천	3,051,961	인천	116,863
경북	2,506,526	부산	114,165
대구	2,353,032	전남	98,125
전남	1,779,135	울산	89,871
전북	1,724,856	충북	88,220
충북	1,596,502	대구	73,115
강원	1,508,500	전북	64,161
광주	1,392,013	강원	62,107
울산	1,091,948	광주	51,875
제주	664,792	제주	26,013
세종	391,965	세종	16,719

※자료: KOSIS
※인구는 2025년 기준이며, GRDP는 2024년 기준임

아울러 제정안들에 규정된 각종 특례 조항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시·도민을 위한 복지와 인재양성, 미래 산업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한 지방주권 확립 및 자생력 확보 가능성, 통합특별시의 명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조항을 통하여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정안의 각종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규정 등이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서 마련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의 규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분산하고,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제정안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16].

<5극 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참고로,「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17],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는 각각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였음.

---

16)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모델에 대해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 등을 활용한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통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및 각종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음.

17)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 3. (생 략)
④ ~ ⑪ (생 략)

다만,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18]를 고려할 때, 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19]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18)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책포럼(2회), 주민설명회(20회)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2025년 5월에 실시한 TJB·디트뉴스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54.5%, '반대'29.1%,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5%로 나타났고, 7월 17일에 실시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공감한다'65%, '공감하지 않는다' 35%로 조사되었으며, 7월 21일에 실시한TJB 여론조사에서는 '찬성'48.2%, '반대'31.1%, '모름'20.7%로 집계되었음.
또한, '26.12.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찬성 49%, 반대 41%, 모름 및 무응답 10%로 집계되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찬성 57%, 반대 30%, 모름 및 무응답 13%로 집계되었음

19)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 ⑩ (생 략)

3.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0조(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대전충남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충남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대전충남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입법적·행정적 조치와 지원 및 우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제39조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제4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32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48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28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13. 대전충남특별시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16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제92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별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들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

함으로써 통합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 간에 원활한 협의·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 유지의 필요성, 타 특별법에서 유사 기구에 대해 별도의 존속기한을 두지 않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20]와 강원특별자치도[21] 및 전북특별자치

---

20) **「제주특별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도[22] 또한 지원위원회의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별도의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강원특별법」**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전북특별법」**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77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존속기간 규정은 없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2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전충남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전충남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전충남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다.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대전충남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대전충남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대전충남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대전충남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통합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대전충남특별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통합특별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관계법률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양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특별시의 자율성과 권한 이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참고로,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은 제정안 제12조와 유사한 규제자유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3조에 규정된 '법률안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23]하고 있으며,

23)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은 제정안과 유사하게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24].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4) **「제주특별법」**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6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제23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대전충남특별시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양에 대한 대전충남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양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6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전충남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이관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23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는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전충남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합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제25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25]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도록 하고, 해당 사무의 이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제주특별법」은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26]을 두고 있는데, 해

---

25)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6) **「제주특별법」**

제23조(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 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관리: 제274조제4항, 제394조제2항, 제412조제2항·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사무
2. 중소기업(시험·분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9항,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의 판정 등 보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5. 환경: 제367조제1항 전단,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1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5조제1항 단서 및 제394조제3항에 따른 사무
6. 노동(「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95조부터 제4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

당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관리·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환경·노동에 관한 사무를 이양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성일종의원안에서는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우선이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우선이양 사무 관할기관>

이관 이전	이관 이후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해운항만과
제주환경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제주지방광주노동청 제주지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	제주보훈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①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광역생활권의 지정 및 운영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9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내 둘 이상의 시·군·구(행정구는 제외한다)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공동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 연합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광역생활권 연합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 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 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광역생활권 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④ 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충남특별시와 광역생활권 연합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광역생활권 연합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광역생활권 연합의 규약 및 기관구성(규약의 내용, 기본계획,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 등을 포함한다), 운영(경비의 부담,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가입 및 탈퇴, 해산, 규정의 준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광역생활권 연합에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광역생활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2장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27]를 준용하여 광역생활권 연합을 설치하거나(성일종

27) **「지방자치법」**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

의원안)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00의원안)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취지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고려할 때,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28].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지방교부세법」 규정[29]에도 불구하고 광역생활권 연합에 대해 직접 지방교부세를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역생활권을 구성하는 시·군·구는 이미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30]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8) 이 경우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비용부담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적용됨.

29)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0)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7. 지방의회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6조(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둔다.
제21조(특별시조례) ① 특별시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7조(통합특별시조례)** ① 통합특별시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조례는 특별시조례나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조례 제정의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합특별시조례의 입법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28조(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회의원(이하 “통합특별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80명 이내에서 제30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0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으로 본다.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시·군·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0조(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2조(특별시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무기구 및 직원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1항 및 제125조의 규정 및 그 위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사무처와 실·국·과 등 하부조직 설치 2. 사무처 이외의 입법지원 전담조직 설치 3. 제1호 및 제2호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4. 사무직원의 직급 및 정원기준 5.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기준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와 그 외의 입법지원 전담조직(이하 “사무처등”이라 한다)의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의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등에 대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의 시민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직분석·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등과 정원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조직분석·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경비) ① 특별시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대전충남특별시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제33조(통합특별시의회 예산)** ①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통합특별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특별시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 예결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 30일 전까지 예결산심사위원회의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특별시장에게 송부한다.	⑤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통합특별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5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원(이하 “특별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34조(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5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6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시민 모니터링)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시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된 ① 조례, ②선거 및 선거구획정, ③ 사무직원, ④ 경비, ⑤ 전문인력, ⑥ 의정활동비, ⑦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특별시조례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규정[31]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일관되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해석[32]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범

31)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광역적·복합적인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병도의원안은 시민이 직접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집행부의 정책입안·결정·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의 감시·견제수단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로, 「제주특별법」은 제정안과 유사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2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33].

---

33) **「제주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8. 자치행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7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명으로 하되,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밑에 2명의 부교육감을 두되,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대전충남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제2항,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4.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④ 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⑦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및 자치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조직·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2.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 사업 활성화 3. 그 밖에 통합특별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⑧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군·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⑨ 교육장은 시·군·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⑪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0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대전충남특별시의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제39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을 둔다.
② 대전충남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직속으로 지역 소방본부를 두고 지역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청 차장을 2명 둔다.
③ 소방본부장은 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역 소방본부장을 지휘·감독하고 지역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특별시소방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전충남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청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충청남도 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대전충남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충청남도 교육청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통합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폐지되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	③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원(지방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대전충남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42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대전충남특별시인사위원회 및 대전충남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대전충남특별시인사위원회 및 대전충남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 분야·기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공무원 임용은 제외한다.
⑤ 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⑤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⑥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32조(국가와 대전충남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특별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	**제44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를 할 수 있다.	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대전충남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충남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대전충남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대전충남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34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직원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제46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직원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있다.	이주지원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나.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 다.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생활지원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 나. 한시적인 주거지원비 지급 2.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수준의 한시적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47조(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자치기구 외에, 지역 공동체 회복과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하여 행정리(里) 및 통(統)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자치회를 설치하거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자치회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구에 제안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마을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8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와 인접한 시·도지역에서 대전충남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	**제14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충청권 지역에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권 지역의 범위와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례시 지정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특례시 특례를 적용한다.**
③ 대전충남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한다.	**제49조(상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한다.
제36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대전충남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 소속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특별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의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통합특별시장은 마을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군·구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자치조직, 기준인건비제의 특례, 소방조직에 관한 특례, 인사운영 특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의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을 정원 외로 인정하고,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동등 처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기존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종전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로 규정하여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인사운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거리 지역으로 근무하게 된 공무원·직원 또는 청사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직원 등에 대해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병도의원안은 현행 특례시의 기준[34](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완화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간주하고, 특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통합특별시 내 거점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인 교육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교육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마을자치회 등 마을단위의 주민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35]은 시·군·

---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

구 통합에 따라 초과되는 공무원에 대해 정원 외로 인정하고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병도의원안은 소방조직에 관한 특례로서 통합특별시에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소방조직의 중앙-지방체계를 경찰조직과 같이 맞추고, 소방조직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특별시의 행정체제에 부합하는 소방행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임.

여야 한다.

9. 자치재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39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2. 종전의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4.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5. 사회간접시설의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립 문화시설의 설치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 분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제51조(국가의 행정·재정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제4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와 시·군·구 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으로 인하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41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전충남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53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42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대전충남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대전충남특별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대전충남특별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대전충남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대전충남특별시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대전충남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를 대전충남특별시 및 시·군·구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양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대전충남특별시 또는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전광역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교부액 중 자치구 해당분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및 제7조를 산정함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58조(통합에 따른 지원금의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이 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부되는 제57조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에도 불구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하고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대전충남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4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전충남특별시 계정 설치)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전충남특별시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시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48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	**제59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49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제1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38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9조 및 제151조부터 제155조까지에 따른 첨단산업 및 양자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 촉진,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건설 및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개선,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50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대전충남특별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제51조(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하여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의 적용 조항을 면제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52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국가의 재정지원, 예산의 지원 및 특례, 국세 교부 및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등 통합특별시의 자치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자치권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성일종의원안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통합특별시에 ①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토지·건물 및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36], ②관할구역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

의 50%, ③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교부하도록 하며,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통합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에 대해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된 조세를 귀속시키고,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인 책임과 판단에 따라 해당 재원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재정여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내국세 총액의 0.3%)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재정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성일종의원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양도소득세로 1조 1,534억원(대전: 4,961억원, 충남: 6,573억원), 법인세로 1조 7,327억원

36) 참고로, 현재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세의 10%도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총액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어 각 지방에 배분되고 있음.

(대전: 5,950억원, 충남: 1조 1,377억원), 부가가치세로 3조 6,887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매년 1,178억원을 10년간 교부받게 되고, 보통교부세로 매년 4,909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4,362억원을 추가로 10년간 교부받게 됨.

10.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54조(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55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27조(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 후단 및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10항 및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②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40조를 통합특별시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특별시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특별시장에게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대전충남특별시에 귀속된다. 이 경우 대전충남특별시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③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특별시장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이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5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	**제118조(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은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9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59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0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에 따라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같은	**제121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하거나 지정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한 영재학교의 운영을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재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영재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⑤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⑨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⑩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2조(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사립학교법」 제4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전략산업 종사자,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및 외국인 정주 인력의 자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은 해당 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전략산업 인력 양성 또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의 부담액은 국가 부담액 이상으로 하며, 국가 및 통합특별시의 재정지원은 토지의 취득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⑦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범위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⑧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 배제 또는 일부 조정 2. 외국 교육과정 및 학력의 인정 3. 외국의 교원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의 교원 임용 4. 학급 편성 기준 및 학생 정원의 탄력적 운영 5. 등록금 책정 및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 6. 기숙사, 국제연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및 수익사업의 병행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대전충남특별시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62조(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제123조(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같은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통합특별시장이 5년마다 통합특별시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설립하거나 지정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	⑥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4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통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설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6조(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8조(대학설립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129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⑦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3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특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구체적인 지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한 유치원의 장은 영·유아교육·보육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2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시, 평가 및 지원 규모 등에서 통합특별시를 우대해야 한다.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인재육성, 산학협력 및 지역 정주 등과 관련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규제의 특례 적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평가 및 지원규모 등에서의 우대 방법, 제2항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법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제특례 적용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지역대학기금) ① 통합특별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역대학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으로 조성한다. 1.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등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육성 지원 3.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업여건 개선 및 취업 지원 4. 「고등교육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고등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지역대학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5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①「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관할 대학이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6조(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 관할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137조(인재양성지원단)** ① 교육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인재양성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양성지원단은 통합특별시의 인재육성, 산학협력 및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의 평가 및 지원규모 설정 2. 제132조 제2항에 따른 각종 규제의 특례 적용 지원 3.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인력 양성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4. 제135조에 따른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 연계를 위한 학교,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통합통합특별시의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6. 통합통합특별시의 국가 전략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7. 인재양성 정책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9. 그 밖에 통합통합특별시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재양성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재양성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대전충남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충남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특별시장은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이 대전충남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사무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6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의 보직 운영 및 평가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운용 방안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 보직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및 그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7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8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특별시장은 제6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대전충남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교육감 선출방식, 학교법인 설립·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영재학교·국제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학교의 통합운영,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자치경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선, 성일종의원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37]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에

---

37) **「제주특별법」**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⑤ 거점지구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서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형태이며, 대전광역시는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한병도의원안은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교육 자치의 보장 측면에서 사전동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경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경찰청장 임용제도 및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의 형평성, 자치경찰제도의 목적·취지와의 정합성, 및 국가경찰의 인사·지휘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1. 자치감사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69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73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68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한 통합특별시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④ 특별시장, 특별시의회 및 특별시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전충남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70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제65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제66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72조(자치감사계획)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	**제67조(자치감사계획)**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대전충남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73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72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67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76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71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감사에 필요한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있어 조직·인사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자격 기준, 선정·추천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사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성일종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의 감사배제 특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통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교육·학예 분야는 교육감이 임명한 감사기구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는 합의제감사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1명 포함 3명이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전·충남 및 제정안의 감사위원회 비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제정안
형태	합의제	합의제	합의제
소속	광역시장소속	도지사소속	특별시장소속
위원수	위원장1포함 3명이상7명이하	위원장1포함 3명이상7명이하	위원장1포함7명
임명방식	광역시장 임명·위촉	도지사 임명·위촉	특별시장 임명·위촉 3인은 의회 1인은 교육감 추천
임명절차	선정·내부심의	선정·내부심의	선정·추천위원회심의
임기	2년	2년	3년

「제주특별법」[38],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자치감사를 위한

38) **「제주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④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감사위원장 임명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강원 및 전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감사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⑧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참고로, 전북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의회 및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 몫(각 2인)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12. 경제과학수도 개발 계획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7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충남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경제과학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 및 대전충남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 및 통합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제·산업·교통·문화 등 광역통합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전략산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8. 공간구조 정비 및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환경의 보존·관리와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지역의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3.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	13.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4.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6.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에 관한 사항 14.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5. 지역의 방재방범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 16. 지역의 전략산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9. 지역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1. 지역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2. 지역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3. 지역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4. 지역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5. 지역 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26.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8. 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	17. 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8.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0. 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너지공급,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80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9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에는 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통합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기본계획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기본계획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위원회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기본계획심의회) ① 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경제과학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4조(기본계획심의회)** ① 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기본계획심의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6.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280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③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③ 기본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기본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3.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확정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시장이 5년마다 지역 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목표·지침·조정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이 때, 기본계획은 경제·산업·문화·교통 등 대전·충남권역의 광역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을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상위 개념의 종합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제정안들과 유사한 규정[39]을 두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39) **「제주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다는 점, 제정안들과 달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북특별법」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13. 개발사업의 시행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81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5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2조(기초조사) ① 특별시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76조(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83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7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제84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통합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4조제9항에 따른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79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7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7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8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경관 심의	2.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경관 심의(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또는 제200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승인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제외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2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등(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3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 허가	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 허가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 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 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와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당 법령에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그 개발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 제30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86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제8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7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7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1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대전충남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8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	**제82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9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제148조에 따른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3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0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부담금 등의 감면)**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원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충남특별시계정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특별시장은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5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78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를 거쳐 대전충남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회를 거쳐 충남대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③ 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조례에 고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투자진흥지구는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는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은 제9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86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5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	**제88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가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89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통합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에 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97조(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8조(부담금 등의 감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제65조(부담금 등의 감면)**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원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와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의 원활한 육성 및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의 원활한 육성 및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1조(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청권(“통합특별시,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이하 “투자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투자공사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인 종전의 대전광역시에 둔다. ③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한다. 1. 정부 2. 통합특별시,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④ 투자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2. 제5항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투자·융자 및 기술지원 4.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업무 5. 그 밖에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투자공사에 통합특별시 및 충청권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한다. ⑥ 정부는 투자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⑦ 투자공사의 설립·운영,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 이사회의 구성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으로 정한다.

제정안들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조사·사업시행자 지정·인허가의제·개발부담금 감면 및 귀속 특례·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40] 특정 사업유형에 한정하여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정안에 비해 의제되는

40)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에 한정하여 인허가의제를 인정하고 있음

인·허가의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허가 의제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법에 미규정된 인·허가 의제 조항>

의제 조항	현행 처리 방식
건축법 제4조, 제29조	건축위원회 심의, 공용건축물 건축·용도변경·가설건축물 건축 등 시 허가권자와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필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과 사전협의 시 인·허가 의제
관광진흥법 제55조	조성계획 승인 전 시·도지사 승인 후 토지 매입 시 사업시행자로 간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 제79조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승인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공동구 점용·사용 허가, 설치계획 포함 및 협의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 작성·변경·인가·폐지 시 고시 필요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	초지 조성 전 허가 신청 필요, 지자체장 지정
농지법 제35·36·40조	농지전용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용도변경 승인 필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필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필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필요
산림보호법 제9조, 제11조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신고, 지정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조림·벌채 등 신고 필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 벌채 등 허가·신고 필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18조, 제18조의2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필요

의제 조항	현행 처리 방식
산지관리법 제6조, 제25조	보전산지 변경·해제, 토석채취 허가 필요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필요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필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 지정 필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인가·신고 필요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필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사업 착수·변경·완료 신고 필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필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필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필요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서장 동의 필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필요

또한, 제정안들의 토지특별회계 설치 및 특례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조세·개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재정 수입의 감소, 개발부담금의 50%를 통합특별시 계정으로 귀속시킴에 따라 타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범

위(성일종의원안: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vs 한병도의원안: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귀속 특례를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제주특별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특례 등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 및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비교>

	제정안	「제주특별법」
명칭	대전충남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지역	①투자자희망지역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	①투자자희망지역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역 **※시행령 상 조건** 1. 2천만달러(한화 약290억원)이상의 투자금액으로 관광호텔, 카지노, 면세점, 국제회의시설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2. 500만달러(한화 약 73억원)이상의 투자금액으로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 제학교, 첨단기술 활용산업 등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자금 지원	국가: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 ※한병도의원안은 지원주체로 통합특별시 포함	국가 및 제주도: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
	대전충남특별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제주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국·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30년 이내	50년 이내
조세 감면범위	제한 없음 ※한병도의원안은 조세감면규정 X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

	제정안	「제주특별법」
부담금 감면범위	①개발부담금 ②기반시설설치비용 ③농지보전부담금 ④대체초지조성비 ⑤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병도의원안은 ①교통유발부담금, ②생태계보전부담금, ③환경개선부담금, ④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포함	①개발부담금 ②기반시설설치비용 ③농지보전부담금 ④대체초지조성비 ⑤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⑥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⑦하천 점용료・사용료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충청권(통합특별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의 산업 개발·육성을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3조원의 자본금(정부·충청권 및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산업의 개발·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계에 따른 권역별 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14.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00조(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2조(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 및 대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혁신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과학중심도시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②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혁신 관련 기업의 창업과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과학중심도시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8.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9.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9. 과학중심도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과학중심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12. 과학중심도시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중심도시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5. 육성사업과 연계성을 지니는 대전충남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6.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 17. 그 밖에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한 사항 10. 과학중심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11. 과학중심도시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과학중심도시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4. 육성사업과 연계성을 지니는 통합특별시 외의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 16. 그 밖에 과학중심도시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과 협의하고, 지원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6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중심도시 육성과 관련이 있는 계획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중심도시 육성과 관련이 있는 계획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중심도시 육성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과학중심도시 육성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
⑦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⑧ 정부는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1조(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3조(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2조(실시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4조(실시계획 수립·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과 전년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전년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차년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실시계획 및 제3항의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실시계획 및 제2항의 보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실시계획의 시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실시계획의 시행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행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05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술성 평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하여 예비타당성대상 사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과학기술혁신 촉진 및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중심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5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중심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5조(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특별시장은 공동위원장이	**제96조(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된다.	
②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대전충남특별시의 과학기술혁신 유관기관을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7조(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통합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이하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1. 제92조에 따른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2. 지원위원회 및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운영·지원	2.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3. 과학중심도시의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	3. 지원위원회 및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운영·지원
4.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4. 과학중심도시의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
5. 과학중심도시의 연구개발 실용화 기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진흥	5. 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6.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	6. 과학중심도시의 연구개발 실용화 기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진흥
7.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
8.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지정 목	9.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부와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를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매년 세출의 100분의 30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지원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08조(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관과 기구에 속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9조(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시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신청한 경우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8조(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신청한 경우 통합특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0조(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우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9조(연구산업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시책을 통합특별시에서 우선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1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제100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제112조(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	**제101조(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3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2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제7항·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제7항·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114조(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3조(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범위를 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115조(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특별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과학기술중심도시육성 기본계획,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연구산업진흥단지·「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성일종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진흥기금·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과학기술 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과학기술중심도시 육성기본계획 수립·시행	-과기부장관에게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 과학기술 집적지로 육성할 의무 부과	규정 X
	-과기부장관이 5년 단위 과학중심도시육성 기본계획 수립	-통합특별시장이 5년 단위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특별시장 협의, 지원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기본계획 수립·승인 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것으로 의제	규정X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의무)	-국가는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재량)
지원계획 및 실시계획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좌동)
	②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	(좌동) ※다만, 추진실적 제출 규정은 제외
	③국가는 실시계획 시행에 행·재정적 지원	(좌동)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①과학중심도시육성위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선정 가능 ②과학중심도시육성위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술성평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하여 예비타당성대상 사업을 우선선정 가능 ③우선선정된 사업 중 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능	규정 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특례	- 과학중심도시 조성 소요비용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지원계정에서 우선 지원(의무)	(좌동) ※단 재량적 지원으로 규정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및 지원단	①과기부장관 및 특별시장은 과학중심도시 내 기관·단체의 공동발전방안 협의를 위해 국가기관·정출연·공공기관·연구소 등과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구성·운영	특별시장이 과학중심도시육성을 위해 국가지자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 구성된 과학중심도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②과기부장관 및 특별시장은 공동위원장	규정 X
	③전문위원회 설치가능	(좌동)
	④과기부장관은 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혁신 유관기관을 과학중심도시육성지원단으로 구성·운영 가능	(좌동) ※단, 협의대상에 교육부장관 포함
	⑤정부·특별시장은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가능	-특별시장이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세출의 30%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지원함	규정 X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 특별시장 요청 시 대전충남특별시 내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및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기관·기구에 속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를 부여하며 사증발급 가능 ※참고로, 현재는 유학(D-2)은 2년, 특정활동(E-7)은 3년의 체류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규정 X
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 과기부장관은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자가 실증을 신청한 경우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지원	(좌동) ※다만, 지원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확대
과학기술산업 기반조성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산업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시책을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우선 수립·시행(의무)	(좌동) ※다만, 우선 수립·시행을 재량으로 규정함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 특별시장이「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	(좌동)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	① 과기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시 특별시장의 의견을 반영	(좌동)
	②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면적 변경 가능	(좌동) ※다만,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까지 변경 가능
	③특별시장 의견을 들어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반영(의무)	(좌동) ※다만, 반영규정을 재량으로 규정
	④특구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설정 가능	(좌동)

다만, 과학중심도시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관련하여 성일종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병도의원안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학중심도시육성에 관한 통합특별시의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특별시장이 계획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한병도의원안은 각종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특례를 배제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의 연구개발특구 면적 변경신청 범위를 제한하여(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통합특별시가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산업발전 가능성 및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일정 비율(매년 세출의 30%)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제도화한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매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세출의 100분의 30을 지원받는 경우 매년 약 3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배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기금운용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통합특별시 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조성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에 지정·운영 중인 연구산업진흥단지(대전, 부산 등)와의 기능 중복이나 연구산업 기반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연구산업진흥단지 간 역할 분담 및 국가 차원의 연구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강원특별법」은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특별법」은 연구개발특구 변경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15.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조성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16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충남특별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5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 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7조(탄소중립 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특별시장은 탄소중립 도시사업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 단위 및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 2. 인구현황 분석: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밀도, 1~3차 산업 종사자 수 등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도시지역 용도별 면	**제106조(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탄소중립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 및 탄소중립도시 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 등 2. 인구현황 분석: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밀도, 1~3차 산업 종사자 수 등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도시지역 용도별 면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적, 기반시설 현황 등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홍수·해수면상승·가뭄으로 인한 기후재해 노출, 기후재해 민감도, 기후위기 적응능력 등	적, 기반시설 현황 등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폭염·홍수·해수면상승·가뭄으로 인한 기후재해 노출, 기후재해 민감도, 기후위기 적응능력 등
제118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 집적화단지의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7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 집적화단지의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9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통합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0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제10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성장 기본법」 제48조의 정부의 권한은 대전충남특별시의 권한으로 하고, 대전충남특별시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③ 대전충남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정의로운 전환 기금 모집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대전충남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대전충남특별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군의 부담금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3. 기금운용 수익금 4. 정부의 보조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이 기금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4.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6.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운영 7.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 8.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9.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금위원회가 필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⑥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3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시장이 지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원)**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2조(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4조(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 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3조(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5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4조(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제126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발전용량이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공유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면 점용·사용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사항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27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대전충남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 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전충남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9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통합특별시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 그 점용료 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공유수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8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9조(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 작성시 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제115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1조(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제조설비·수소저장설비·수소가스설비 등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수소제조설비·수소저장설비·수소가스설비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할 수 있다.	**제116조(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저장소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댐 구역, 저수지 및 담수호 등의 수면에 부유(浮遊)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의 보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주거지, 도로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경관 보호에 관한 사항 2.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3.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준에 적합하게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댐관리청 등과의 협의 및 승인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의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선도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에너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며, 성일종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공유수면점용 및 전기요금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특례 및 수상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특례 등을 규정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탄소중립선도 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①특별시장에게 탄소중립 도시 조성의무 부과 ②5년 단위 탄소중립도시계획 수립 ③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 가능	(좌동)
	④특별시장은 탄소중립 도시사업 구역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시·군단위 및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기초조사 실시	(좌동) ※다만, 기초조사의 대상에 구를 포함함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육성특례	-국가가 대전충남특별시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발전 등에 대해 우선 지원가능	(좌동)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 특례	-종전 대전 및 충남 소재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통합 후 불이익이 없도록 행·재정 지원 (의무조항)	(좌동) ※다만, 재량조항으로 규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①대전충남특별시가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변경·해제	①대전충남특별시가 정부에 대하여 일정 지역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요청 가능
	②특구 지정권한 등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대전충남특별시가 지원대책 등을 수립	규정X
정의로운 전환 기금모집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②기금안정성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 지원 ③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X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특례	①「탄소중립기본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의 에너지전환을 우선지원하는 정책 수립·시행 ②국가는 해당 정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의무)	(좌동) ※다만, 행·재정 지원을 재량으로 규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특례	①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장이 지정	규정X
	②국가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무)	(좌동) ※다만, 행·재정 지원을 재량으로 규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규정X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	(좌동)
	②국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무)	-통합특별시장이 행정·재정 지원 가능 (재량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특례	①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산업부장관은 우선 지정(의무사항)	-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시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우선 지정 가능(재량사항)
	②경미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	규정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특례	①해상 신·재생에너지사업(발전용량 4만kw 초과 사업으로 한정) 및 송전선로·부대시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 ②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화예측기 설치·지반조사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관	규정X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특례	골재 및 광물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장 가까운 경우 80%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수입으로 귀속 ※현재는 50%를 수입으로 귀속함	(좌동) ※다만, 「공유수면법」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수입초과분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전기사업 특례	①태양광·풍력에 관한「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인가 등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에게 이관 ②3천kw 초과 발전사업의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③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 발전사업의 기준·절차를 특별시조례로 규정	규정X
전기요금 차등 적용 특례	①「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특별시 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조건을 차등적용 가능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약정 작성시 특별시장과 사전 협의	규정X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례	①특별시장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은 우선 지정 ②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 가능 ③국가는 수소특화단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가능	①특별시장은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연구개발 활성화·사업화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②국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가능
수소제조설비 설치 특례	①수소제조설비·저장설비·가스설비 등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 등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	(좌동)
	②수소제조설비·저장설비·가스설비 등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 가능	규정X
수상형 태양광설비 설치특례	규정X	수상형태양광 발전설비 입지·설치기준 별도규정

제정안들의 탄소중립선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성일종의원안의 조제목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명칭이 달라, 이를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한병

도의원안처럼 기초조사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를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권한이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권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변경권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양하지 않고 있는데, 통합특별시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특별시장의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전기사업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특별시에 대해 차등적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산업계 간 또는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규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특별시장에 대해 이양된 권한>

대상조항		이양 권한
전기사업법	§7	전기사업의 허가
	§9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10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12	사업허가의 취소 등
	§13	청문
	§61①②③④⑤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71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108③	과태료
전기안전관리법	§8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20	적합명령
	§52③	과태료

아울러 현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41]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역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들과 같이 이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해양자원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배타적경제수역 내 공유수면에 관한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분산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제주특별법」은 풍력에 관한 전기사업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42].

---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42) **「제주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6.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1) 첨단 신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32조(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우선 지원) 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대전충남특별시가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 국방 5대 신산업 2.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3.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4. 나노반도체 산업 5. 양자산업 6. 로봇산업 7. 모빌리티 무선통신·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 9. AI·메타버스 산업 10. 코스메틱 산업 11.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2. 삼차원프린팅산업 13. 그 밖에 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반영된 대전충남특별시 소관 산업 육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된 국방산업 2.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3.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4. 나노반도체 산업 5. 로봇산업 6. 모빌리티 무선통신·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7.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 8. 인공지능·가상융합산업 9. 코스메틱 산업 10.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1. 삼차원프린팅산업 1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제133조(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	**제22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2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획예산처장관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제1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38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9조 및 제151조부터 제155조까지에 따른 첨단산업 및 양자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 촉진,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제134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9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35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0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6조(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	**제141조(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이하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7조(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8조(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	**제142조(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치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치안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치안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4.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위산업 및 치안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0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3조(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대한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설치한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4조(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하여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특화거점도시 및 연계산업단지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메가 클러스터 우선 지정 2.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 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된 통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합특별시에 대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도시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및 같은 법 제17조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③ 국가는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된 통합특별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특례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 혁신산업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 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가 전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우선지원	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기본계획 수립 시 대전충남특별시가 우주, 인공지능,바이오,나노반도체,양자·로봇·이차전지 등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	규정X
	②해당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사항)	-해당 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재량사항)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기재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능	규정X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특례	①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	(좌동)
	②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 인·허가, 세제지원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규정X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례	①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	(좌동)
	②국가는 해당 특화단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의무사항)	-국가는 해당 특화단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재량사항)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	①특별시장이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 시 우선 지정·조성	(좌동)
	②국가는 해당 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사항)	-국가는 해당 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재량사항)
첨단바이오헬스 산업클러스터 조성·운영 특례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 인·허가, 세제지원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규정X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반도체산업 및 방산클러스터 육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 (의무사항)	(좌동)
	②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사항)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특례	-특별시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규정X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 연구소 등을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로 우선지정	(좌동)
	② 국가는 연구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X
	규정X	- 국가는 양자종합육성계획 수립 시 통합특별시 양자산업 육성 지원 사항 포함 가능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미래모빌리티 특별도시 지정 특례	규정X	①모빌리티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촉진 위한 지원 ②관련된 권한을 위임 ③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무)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립 취지 및 지역별 산업특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산업 특례를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지원의무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제정안들에 따른 신산업 특화단지의 현재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

신산업 특화단지명	현황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총 12개소 (대전·충남 지역 2개소 위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총 1개소 (사천)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0개소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	바이오산업분야: 총 8개소 (이 중 1개소 대전(유성) 위치)
	재생의료 산업분야: 총172개소 (대전·충남 지역 5개소 위치)
반도체·방산클러스터	반도체 분야: 용인·평택·구미
	방산분야: 대전·구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총 2개소 (대구·경북 및 충북 오송)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0개소

2) 드론·지능정보화·SW·소재부품장비 특화 구역 지정 등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4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5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의 허가·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6조(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의 허가·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7조(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제148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9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0조(디스플레이 국가전략거점 조성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디스플레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적 지원을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다른 지역보다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각종 첨단산업의 시범지역·거점지구 등의 지정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거나 우선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드론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등 특례	①「드론법」 상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관리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좌동)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 특례	①「도심항공교통법」 상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에 관한 권한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③국가는 필요한 행·재정 지원 (의무사항)	(좌동)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등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에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정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좌동) ※다만, 거점지구 지정·지정취소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③국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X
	-	-거점지구 지정 시 거점지구 조성계획 수립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등 특례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상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좌동) ※다만,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자체인 경우 제외 지정·지정취소 시 과기부장관과 협의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③국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X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정 ②국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재량사항)	(좌동)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거점 조성 특례	규정X	국가의 디스플레이 관련 행·재정 우선 지원

다만, 제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산업 등에 관한 지정권한 이양 및 지원 조치는 타 지역과의 정책적·재정적 형평성 문제나 중앙정부의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첨단산업 및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인 조성·확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46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없이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157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147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51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148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인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52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충남대전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첨단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149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관할 구역 내 국방 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1. 국방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 시설 2. 국방 관련 제조업체의 입주 및 지원 시설 3. 국방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 4. 국방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소 운영지원 시설 5. 기타 국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특별시장은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③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방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대전충남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167조(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논산시, 계룡시 일원을 국방 관련 기관,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집적된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이하 "국방클러스터"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방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방 인프라 및 국방 전용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2. 수도권 소재 국방 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및 설립 3. 민·군 기술 협력 연구개발(R&D) 및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4. 국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기관 및 산학융합형 캠퍼스 운영 ④ 방위사업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국방클러스터 내 특정 구역에 대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68조(국방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국방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방클러스터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9조(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원을 공학 관련 기관,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집적된 테크노폴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시장은 테크노폴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 및 육성을 위해 2년마다 테크노폴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공학 인프라 및 공학 관련 국가연구단지의 조성 및 관리 2. 수도권 소재 공학 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및 설립 3. 민간 협력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공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특화 교육기관 설립 5. 수도권 소재 공과대학과 연계한 산학융합형 캠퍼스 이전 및 운영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⑤ 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5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51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제154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정안들은 산업 육성 및 첨단 신산업·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시장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도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산업 전략 수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조정 특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생략 가능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진 가능
국가산단 지정요청 특례	①「산업입지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이 지정요청 가능	(좌동)
	②요청 시 30일 이내 의견 회신	규정X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관리	①국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인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②조성 등의 절차는 「산업입지법」 등에 따름	(좌동)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무)	규정X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국방 국가산단 및 관련시설 조성·운영을 위해 각종 지원 실시 ②국방 국가산단 확대·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③국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④국방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특별기금 설치	①특별시장은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가능 ②국가는 행·재정 지원(의무) ③특별시장은 관련 기본계획 수립 ④국가는 관련 사업 시행 시 우선 지원
국방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특례	규정X	①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가능 ②입주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③규제특례 우선 적용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지원	규정X	①특별시장은 테크노폴 클러스터 조성가능 ②국가는 행·재정 지원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 특례	①국가산업단지의 권한을 제외한 「산업입지법」 상 각종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좌동) ※다만, 특별시조례 규정시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특례	①종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관할 내 국가산단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 가능 ②변경 방법·절차 등은 「산업입지법」 준용	(좌동)

다만, 성일종의원안은 특별시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한병도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절차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들은 특별시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30일 이내 회신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수행 가능성과 함께 충분하고 적절한 심사기간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관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성일종의원안은 한병도의원안과 달리 첨단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의무조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첨단 신산업 육성

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의 규모, 타 지자체의 기술개발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 및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제정안의 특례규정은「제주특별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4) 신규·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벤처·창업·산학협력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52조(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5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6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특별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설비 등을 설치 및 구축하려는 사업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55조, 제56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따른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4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58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해제 및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소속기관장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한 통합특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55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지정한	**제159조(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창업 집적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6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60조(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소·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 내 신규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와 벤처기업법 상 특례, 창업집적 시범지구 및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규정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의 신

속한 조성과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산·학·연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신규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 내 신규 산업단지와 공항·항만과의 연결도로 및 철도망 연결을 위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국비로 지원 ②해당 기반시설은 「산업입지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규정 X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지정	①대전충남특별시 내 경쟁력강화사업 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에 대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지정 가능 ②우선 국비 지원 가능	(좌동)
노후거점 산업단지 에너지자립·탄소중립 지원	규정x	①국가 및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 ②인허가 우선 처리 및 통합 심의 ③취득세·재산세 감면 ④건폐율·용적률 등 완화적용
「벤처기업법」에 관한 특례	①「벤처기업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각종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	(좌동) ※벤처기업 창업·영업활동에 관한 투자·자금 등 자료요청권한 배제 중소벤처부장관과 사전협의 필요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좌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료요청·실태조사요청시 협조
창업집적 시범지구 지정·운영	①특별시장은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운영 가능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의무사항)	(좌동) ※다만, 행정·재정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특별시장은 산학협력 선도지구 지정 가능	(좌동)
	②미래첨단산업지역을 우선하여 선도지구로 지정	규정X
	③국가는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운영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무규정)	(좌동) ※다만,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성일종의원안은 한병도의원안과 달리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특례를 두고 있는데, 특례 규정을 통한 통합특별시의 신규 산업단지 유입효과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들은 국가의 의무적 재정지원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국가 재정 부담의 적정성, 사업별 필요성과, 유사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의무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례

성일종의원안
제157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종류) ① 정부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8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5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59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0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과 지원금 특례)**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제15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1조(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특례)** ①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사업자는 입주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안전·환경·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근거를 규정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재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을 우선 고용·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종류	①정부·대전충남특별시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노력 의무 ②지원사업 종류: 1)주변지역 개발·주민복리 증진사업, 2)주변지역이 속한 시·군에 대한 사업, 3)주변지역의 발전·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 ③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	규정 X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등 설치	①대전충남특별시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②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①특별시장이 매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②주변지역 관할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가능 ③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주변지역사업 재원 및 지원금 특례	①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부담 ②지원금액의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변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 우대 특례	①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사업자는 입주에 따른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 가능 ②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우대 가능	

다만,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특례의 경우 타 산업단지와의 재정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6) 기업이전·외국인투자 및 금융지원에 관한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6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16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대전충남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61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4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	**제16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국내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충남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6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대전충남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4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통합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6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대전충남특별시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통합특별시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168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경우 그 절차와 체류자격,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9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의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를 특별시장이 처리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7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① 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	**제13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1조(은행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대전충남특별시 보유한도를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지방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상거래 지급 시 대외지급수단 지급특례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로의 기업 이전·신설 및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적용 배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성일종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여 벤처기업 육성 목적의 은행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반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가업상속공제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비적용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②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규정X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 추가로 5~10% 금액을 추가로 지원함	(좌동) ※다만, 지원내용이 다음과 같음 ①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②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 우선지정 ③ 각종 시책사업 등 우선지정
국내복귀기업 자금지원 특례	①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5~10% 금액을 추가로 지원함 ②해당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분담비율 산정 시 국가가 75%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	(좌동) ※다만, 지원내용이 다음과 같음 ①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②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 우선지정 ③ 각종 시책사업 등 우선지정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에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75%이상을 부담함 ②국가는 5~~10% 범위에서 추가 현금지원 가능	(좌동) ※다만, 지원내용이 다음과 같음 ①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 ②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 우선지정 ③ 각종 시책사업 등 우선지정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대전충남특별시 내 일정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 가능	(좌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배제	①대전충남특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고용의무를 배제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또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지급 가능	(좌동)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규정은 배제함
출입국관리법 특례	①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체류자격·체류기간 상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②특별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배우자·부모·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요청 가능	-법무부장관은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외국인근로자 특례	-「외국인고용법」상 고용노동부장관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 *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규정X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	①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가능 ②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 가능 ③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보조 가능	(좌동) ※다만,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에 대한 규정 마련
은행설립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는 「지방출자출연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출자하여 설립·운영 가능 ②「은행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에 대한 대전충남시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한도를 조례로 규정	규정X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①가업상속공제 및 지방이전기업·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의 경우 지원의 효과성 및 타 지역 지원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의무 적용 배제 및 출입국관리 관련 절차 간소화 특례는 국가적 고용정책 및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③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국가적 통일성 유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④특별시가 은행을 출자·설립할 수 있도록 한 성일종의원안 제171조의 규정은 금융업 인가 및 건전성 감독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 전통산업 진흥 및 해양 중심지 조성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에 관한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70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2.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5.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통합특별시의 농업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과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1조(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1.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3조(푸드테크산업 지원 의무)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2조(푸드테크산업 지원)**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수 있다.
제174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3조(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75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	**제174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통합특별시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대전충남특별시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제176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① 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장으로 본다.	**제175조(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제정안들은 푸드테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에 통합특별시의 푸드테크산업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푸드테크 관련 계획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며, 푸드테크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등 푸드테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특례		①통합특별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②국가는 친환경 농업사업 시행 및 통합특별시의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③친환경농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 연구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동향, 통계 작성·관리 및 대전충남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반영 ②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좌동)
푸드테크산업 지원 의무	-정부는 「푸드테크산업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가는 통합특별시에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른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특별시장은 푸드테크 분야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가능 ②실태조사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좌동)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 특례	①「푸드테크산업법」상 농림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에게 이양	(좌동) ※다만, 이양되는 권한 범위 축소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	규정X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특별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규제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좌동)

제정안들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푸드테크산업 정책의 통일성 측면에서 푸드테크 관련 권한의 이양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병도의원안에서 규정하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 관련 특례조항은 통합특별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인 지원 및 산지전용 관련 권한 이양 특례 등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76조(농업혁신지구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농업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7조(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93조의 투자진흥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 면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7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8조(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의한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9조(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업인 기준은 특별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인 기준 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원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0조(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9조(청년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1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0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2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특별시장,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특별시조례로 한다.	**제178조(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1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182조(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회의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업회의소는 농정 자문, 정책 건의 및 농업인 교육 등 실무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③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농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농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비 3. 그 밖에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3조(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1항, 제68조, 제69조, 제77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제25조제7항, 제25조의3, 제35조의2, 제64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7조제5항 및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4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5조(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필요한 사항 **제186조(충남대전칡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충남대전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인정된 토종가축(칡한우를 말한다)이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87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통합특별시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88조(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 지원
제183조(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	**제18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로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	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특별시장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4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	**제19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8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고령 농업인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그리고 산지전용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권한 이양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구조개혁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농업혁신지구 지정	규정X	①통합특별시장은 농업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혁신지구 지정가능 ②농업혁신지구 지정 시 농림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특례	- 특별시장은 「농지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승인 없이 대전충남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음 ※다만 해제면적은 사전 협의	(좌동) ※해제면적 사전협의 규정 X
농지보전부담금 특례	- 농식품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수목원정원법」 상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가능	규정X
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①「농지법」 및 「농업식품기본법」 상 농업인 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별도로 규정 가능 ②농업인 기준 조정에 따라 절감대는 재원은 농업·농촌 구조개혁에 사용하며, 구체적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규정함	규정X
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 특례	①「후계청년농어업인법」 상 청년농업인 연령을 특별시조례로 별도 규정 가능	(좌동)
	②국가는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비용 지원 주체를 특별시장으로 규정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는 은퇴 고령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가능 ②수급대상자, 수급조건 등 사항은 조례로 규정 ③국가는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	①「스마트농업법」 상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권한 및 조성계획 수립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시 농림부장관과의 협의 필요
	③육성지구 지정 시 농식품부장관은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규정)	(좌동) ※단, 행·재정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특례	규정X	①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법」에 따른 농업인등에게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대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추천 가능 ②농림부장관은 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받아 인증할 수 있음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농업회의소 설치	규정X	①특별시장·시·군·구청장은 농업회의소 설치가능 ②국가·특별시는 행·재정 지원 가능
농수산물 도매시장 특례	규정X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림부장관·해수부장관 권한 이양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 업무 특례	규정X	①「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의 자격·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②특별시장은 「수의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수의사에게도 공수의 엄무를 위촉할 수 있음
동물복지축산 농장 지원특례	규정X	-특별시장은 「동물보호법」에 불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해 비용·교육·상담·판촉·투자유치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충남대전칡한우 보호·육성 특례	규정X	①특별시장은 충남대전칡한우 혈통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 가능 ※조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함 ②특별시장은 「축산법」에 따라 인정된 칡한우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음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특례	규정X	- 통합특별시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구매할수 있음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규정X	- 특별시장은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취업·창업지원, 정주여건지원,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음
산지전용허가 특례	①「산지관리법」 상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	(좌동) ※다만, 이양되는 권한의 범위 축소
	② 관련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규정X
산지전용제한지역 심의 특례	- 1.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2.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1.보전산지의 변경·지정해제, 2.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한병도의원안은 통합특별시장이 농업혁신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농업 혁신과 연관 산업의 집적·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특별시장이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농촌 공간복합형 정원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려는 취지인데, 농지 보전의 공익적 가치 훼손 가능성, 감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및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제정안들은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려는 취지인데, 성일종의원안은 소요비용의 지원 주체를 국가로, 한병도의원안은 특별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의 귀속 주체와 지속 가능성, 국가와 지방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재정 여건에 따른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가축방역관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충남대전 칡한우 보호·육성, 학교·공공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특례 등 각종 특례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통합특별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축산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3) 간척지 이용 및 수산업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8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91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특별시의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4조(부담금 등의 감면)**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원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6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3조(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수산식품산업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③ 제1항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조성금) 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 4. (생략)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수산업법」 제60조 및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어구·부표의 회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7조(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 특별시장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4조(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8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5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9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6조(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0조(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낚	**제197조(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낚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1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8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해양수산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및 어항 등 지역의 해양수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특례	①「간척지법」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간척지운영위원회 설치,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함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좌동) ※다만, 종합계획 수립 및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시에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
	③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	(좌동)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수산식품산업법」상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함	- 수산업기본법」상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수산식품산업법」상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②「수산자원관리법」 상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	(좌동)
	③「양식산업발전법」 상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수산생물질병법」 상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함	규정X
	④「수산업법」 상 어구 규모제한 및 어구·부표의 회수촉진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	-「수산업법」 상 어구·부표 회수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은 특별시 조례로 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①특별시장은 「수산직불제법」에 불구하고 일정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가능 * 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좌동)
	②국가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X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	①「수산종자산업법」 상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변경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특례시조례로 규정 ②「수산업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수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험어업을 할 수 있음 ③시험어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례시조례로 규정	(좌동)
시험양식업 특례	①「양식산업발전법」 상의 공동 시험양식업의 승인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낚시어선 이용 특례	- 「낚시관리법」 상 낚시어선업 신고, 낚시어선업자 영업 폐쇄,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유어장 지정 특례	①특별시장은 협동양식업 면허를 받은자가 유어장 지정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②관련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성일종의원안은 ①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정권한 및 어구 규모제한 및 어구·부표의 회수촉진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③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기준 및 절차,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기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허가행위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반면,

한병도의원안은 ①특별시장이 수산물의 수출진흥 및 국제협력·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③어구·부표 회수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원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재원 개발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수산정책 전반과의 정합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반영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시장이 지정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일종의원안은 국가가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 부담의 적정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4) 환황해 해양자원 활용 및 도서개발·해양레저관광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92조(환황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89조(환황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3조(대전충남특별시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4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90조(통합특별시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지침 범위내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1조에 따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대전충남특별시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제291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에 관한 특례) ①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93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2.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4. 제193조제4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주민의 복지 증진과 대전충남특별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290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의 지정 2. 개발대상섬 주민의 복지 증진과 통합특별시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95조(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개발대상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6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 및 글로벌국제해양레저도시 육성을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분원을 대전충남특별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섬 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와 교육시설, 휴양·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제292조(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섬발전 및 글로벌국제해양레저도시 육성을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분원을 통합특별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섬 개발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와 교육시설, 휴양·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지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7조(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293조(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국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국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해양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지원체계를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선도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성일종의원은은 한병도의원안과 달리 「섬 발전 촉진법」 상 사업계획 수립·사업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으며, 개발대상섬 지정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및 개발대상섬 육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환황해 해양자원의 활용 및 관리 특례	①「해양치유자원법」상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	①특별시장은 「해양치유자원법」 상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실시 가능 및 해수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 지정·변경을 제안 가능
	②「해양심층수법」상 취수해역 지정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	규정X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섬 발전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①특별시장은 행안부장관이 작성한 지침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②개발대상섬 지정 시 고시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함	(좌동)
	③「섬 발전 촉진법」 상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조성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규정X
	④국가는 특별시장이 개발대상섬을 지정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X
대전충남특별시 섬발전위원회 설치 특례	①「섬 발전 촉진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 섬발전심의위원회 설치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위원으로 구성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④섬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규정
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 개발대상섬 육성을 위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규정X
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특례	①「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분원을 대전·충남특별시에 설치·운영 가능 ②국가는 섬 개발 관련 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집적단지 및 교육시설 등 지원시설 조성 가능 ③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의무조항)	(좌동) ※다만,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재량으로 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특례	- 해수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전충남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우선 지정 가능	(좌동)
수상레저산업 진흥	- 국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신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 가능	(좌동)

성일종의원안은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및 취수해역의 지정에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으나, 한병도의원안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 특별시장의 해양치유자원 조사권 및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제안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심층수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와 권한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이양할 것인지, 특별시장의 조사·제안 기능 중심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통합특별시의 개발대상섬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기반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절차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검증 기능 약화 가능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유인도서 개발, 한국섬진흥원 분원 설치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정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18. 공간의 계획 및 이용

1) 국토·개발제한구역·건축 행정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승인·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제1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대전충남특별시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3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0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01조(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를 조성하는 경우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② 대전충남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입로 설치의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제202조(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특례) 대전충남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203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00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7.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사람 2. 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가 도시계획, 토지이용, 건축 관련 권한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합특별시가 공간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춘 신속하고 통합적인 도시·토지·건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

률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에 대한「국토계획법」상 각종 권한 이양의 범위 및 특별시조례제정의 대상 등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국토계획 체계와의 정합성, 중앙정부의 사전적 관리·조정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완화할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산림 임도 조성이나 진입로 설치 등 일부 형질변경 행위를 조례 범위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통합특별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적 이용 및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이용 필요성과 환경보전 간의 균형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개발·택지개발·주택정책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04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제11조의2제4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01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특별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민간 이윤율 초과분은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 내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제205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대전충남특별시 귀속분에 한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2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6조(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2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207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

   가.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 취득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8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9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 6. (생략)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2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그 운영·관리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수한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세제·금융 및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를 준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0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전충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09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1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5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11조(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자·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212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9항·제10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정안들은 도시·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특별시의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통합특별시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고 통합적인 도시·주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도시개발법」 상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좌동) ※다만, 이양대상 권한의 범위 및 조례제정 대상을 축소함 또한 조례 제정시 국토부장관 사전동의 필요
	③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민간이윤 초과분은 지역내 재투자하여야 함	규정X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귀속·양여·전입절차 등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수 있음	(좌동) ※다만, 조례 제정시 국토부장관 사전동의 필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 심의 특례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등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	-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
택지개발 특례	①국토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규정X
	②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 지정가능	(좌동)
주택건설사업 특례	①「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권한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자의 권한으로 이양함 ②「주택법」 상 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이양대상 권한의 범위 및 조례제정 대상을 축소함 또한 조례 제정시 국토부장관 사전동의 필요
	③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주거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장과 협의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시행	규정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공공주택지구 지정특례	①「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②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③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	①「공공주택 특별법」 상 규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 ②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범위를 확대 가능 ③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 시 국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특례	규정X	①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가능 ②운영·관리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가능 ③위탁시 국가는 국비지원 ④국가·특별시장은 세제·금융·행정지원 마련
가정어린이집 운영 특례	규정X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합시장에게 이양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해제	①특별시장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①특별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음
	②특별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이 필요없는 경우 해제하여야 함	규정X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특례	①「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①「주택법」에 따라 특별시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 가능
	②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경우 대전충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규정X
주택도시기금 출자 특례	규정X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국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특례	①특별시장은 「도시정비법」 상 주택수급 안정 및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함	규정X
	②「도시정비법」 상 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이양대상 권한의 범위 및 조례제정 대상을 축소함 또한 조례 제정시 국토부장관 사전동의 필요

성일종의원안은 이양 대상 권한의 범위와 특별시 조례의 규정대상을 한병도의원안에 비해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병도의원안은 특별시조례 제정 시 국토부장관 사전동의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의 자율적 도시개발 권한 보장과 중앙정부의 사전적 관리·조정 기능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지명,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군용지 활용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13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13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14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대전충남특별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6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4조(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사시설 인접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중 장기간 개발 제한과 안전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의 인접 지역을 말한다)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험저장시설 인접지역 2. 비행·사격시설 인접지역 3. 훈련·군수·본부시설 인접지역 ③ 제2항 각 호에 대하여는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과 개발 제약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5조(군사시설 인접지역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및 특례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 제한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권 제한 현황 2. 군사시설로 인한 안전 위험, 소음·환경 영향 및 주민 생활 불편 3.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행정비용 및 재정 부담 4. 인구 변화,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영향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의 공개·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6조(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재정 및 지방교부세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14조제2항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국고보조율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4조제2항에 따른 시설 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특수수요 보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7조(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개발 지원체계 및 종합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사시설의 유형, 위험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행정·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하여 도시·산업·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군과의 협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군사시설 인접지역 지원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사시설 유형별 지원 방향 및 차등 지원 기준 2.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안 3. 도시·산업·생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 4. 안전관리 및 주민 보호 대책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5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별시장 및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제218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6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대전충남특별시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9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7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	**제220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21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대전충남특별시 또는 관할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21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통합특별시 또는 관할 시·군·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위생·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방화 등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지명 고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과 처분,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권한 등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춘 신속하고 통합적인 행정·문화·국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지명 고시 특례	①공간정보관리법」 상 국토부장관의 지명의 고시 권한을 이양	(좌동) ※다만, 재심의에 따라 지명이 결정된 경우의 고시권한도 이양함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②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함	규정X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특례	- 「문화예술진흥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특별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좌동)
군사시설 인접지역 관련 특례	규정X	①국가는 군사시설 인접지역 지원·특례 마련 ②행안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 ③인접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군사시설 위치 지역 재정특례		①국가·지자체는 군사시설 위치 읍·면·동에 보조금 이상 지원 ②행안부장관은 특수수요 보정대상 지정
군사보호·군사시설 보호법 특례	①「「군사기지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음 ②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③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 의견을 들어야 함	(좌동) ※다만,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권자에 구청장을 추가하여 규정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②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좌동)
미활용 군용지 처분방법	①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해제·양어·매각 등 처분을 하기 전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다만, 특별시장, 관할 시장·군수가 활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②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름 ③미활용 군용지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 매각시 제거·개량비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함	(좌동)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②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징발해제 또는 보호구역해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검토하여야 함 ③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해당 부지의 지상물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전충남특별시 또는 시·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음 ④관할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음	(좌동) ※다만, 미활용군용지 처분 특례 대상에 구청장을 포함

성일종의원안과 한병도의원안은 공통적으로 특별시장 및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관련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구청장을 포함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시 내 행정구역 체계에 부합하는 권한 행사 구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아울러 한병도의원안은 군사시설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실태조사 및 보조금·교부세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적 제약과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광역교통 및 도로·철도 사업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1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는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는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22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의 범위에는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걸치는 도로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의 범위는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220조(대전충남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3조(통합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에 연계되는 도로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2.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및 「도로법」 제8조에 따른 5년단위 시행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1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제19조에 의한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대전충남특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224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① 국가는 제12조에 의한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통합특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2. 대전충남특별시의 서해안 및 동·남·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3. 종전의 대전광역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2. 통합특별시의 서해안 및 동·남·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및 동서축 광역철도망(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포함한다)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3. 종전의 대전광역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 4. 수도권과 통합특별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및 그 연계 노선 ② 국가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비(구간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2조(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소멸 분포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교통	**제22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 2.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사업	립된 사업으로서 제16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건설 및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개선,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225조(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① 국가가 계획·결정하는 광역급행철도 등 초광역 교통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및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의 광역교통,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통합특별시가 지역 맞춤형 광역교통 정책을 자율적·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	①「광역교통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전·충남에 걸치는 도로가 광역도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종전 대전·충남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철도가 광역철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좌동)
	②국토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광역철도를 제외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원(의무사항)	(좌동) ※다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사항)
	③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의무사항)	(좌동) ※다만, 비용 부담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함
대전충남특별시 도로사업 특례	①국토부장관은 「도로법」 상 비용부담원칙에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인구감소지역 연계도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총 사업비의 70%)을 하여야 함	(좌동) ※다만, 인구감소지역 연계도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정지원 규모는 별도 규정X
	②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도로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보조함 ③국토부장관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함	규정X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광역생활권·산업단지 등 경제권과 주변도시의 연결성 강화 및 균형발전를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통망을 우선 구축하여야 함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광역생활권·산업단지 등 경제권과 주변도시의 연결성 강화 및 균형발전를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통망을 우선 구축하여야 함 ※국가는 운영비 전부·일부 지원
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국가기간 교통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함	규정X
초광역 교통사업 재정 특례	규정X	국가가 계획·결정하는 초광역 교통사업 연장·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등의 전부·일부를 국비로 지원 가능

다만, 성일종의원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사항(광역철도를 제외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70%, 광역철도의 경우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

병도의원안은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재정 부담의 확대 가능성과 다른 대도시권과의 재정 지원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성일종의원안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간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달성하려는 취지와 함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기간망 사업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검증 기능의 약화 가능성 및 국가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5) 민간자본유치·투자촉진 및 도시교통 운영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23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대전충남특별시는 고속도로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대전충남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6조(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4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대전충남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	**제84조(부담금 등의 감면)**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원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5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대전충남특별시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226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대전충남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7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7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	**제228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례) 대전충남특별시 내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례) 통합특별시 내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8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일부 지역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 심의를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유상운송 허용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제229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의2, 제23	**제229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국토교통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조, 제25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제4조, 제8조제2항·제3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3제1항·제2항·제8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장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위임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8조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8조제2항·제3항·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3제1항·제2항·제8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의 취지와 상충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30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제231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1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23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32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23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특별시장은 제23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231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1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1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3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① 대전충남특별시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233조(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① 통합특별시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운임·요금을 정한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운임·요금을 정한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23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통합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의 취지와 상충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5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35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하여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제236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	**제23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전을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7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철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대전충남특별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을 신설·운용한다.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민간자본 유치 촉진과 민간투자 부담금 완화, 시내버스·간선급행버스·노면전차 등 교통수단 관련 규제특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규제완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등 민간투자·교통·관광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운영, 교통물류거점 지정,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등 교통 관련 행정·재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합특별시가 교통사업과 재원 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교통·관광 정책을 자율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민간자본유치사업 지원	①국가와 대전충남특별시는 고속도로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 점용허가, 토지·시설 등의 매입 업무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좌동) ※다만, 지원범위를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확대하고 주변토지개발 사업권 부여는 삭제하며, 부대사업 시행 지원을 규정함
	②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국가 및 대전충남특별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좌동)
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 국가 및 대전충남특별시는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좌동) ※다만,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배제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 특례	-대전충남특별시 내 시내버스 및 간선급행버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음	규정X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간선급행버스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좌동) ※다만, 실증특례를 받은 기간 동안 배제
	②국가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 가능	-친환경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 가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특례	-특별시장은 「옥외광고물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간선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좌동)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특례	①특별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음 ②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 심의를 위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규정X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법」 상 면허·등록, 운임·요금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함	(좌동) ※다만, 이양되는 권한 범위 및 특별시조례 규정 사항을 축소하여 규정하며, 조례내용이 법령 취지와 상충되는 등에는 국토부장관 동의 필요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 관련 특례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관련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 지원,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감독,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좌동) ※통합특별시 내의 사업구역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으로 대상 구체화하며, 조례내용이 법령 취지와 상충되는 등에는 국토부장관 동의 필요
대중교통 운영지원	①국가는 종전 대전·충남을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을 지원함 (의무사항)	(좌동) ※다만, 국가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②국가는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을 우선하여 함	(좌동) ※다만, 국가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③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음	(좌동)
교통물류거점 지정 특례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반영(의무사항)	(좌동) ※다만, 국토부장관이 우선검토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
	②국가는 교통물류거점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좌동) ※다만, 국가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교통시설특별회계 특례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함 ②회계 각 계정 간 재원배분 사항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특별시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③특별시장은 조례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철도·교통체계관리·항공공항·항만계정을 운용함	규정x

제정안들은 간선급행버스 체계 전용주행로의 전용차량[43]에 대해 「

4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상 규정[44]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전용차량 도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BRT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한병도의원안은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배제의 범위와 기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친환경" 간선버스 전용차량 도입에 대해서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성일종의원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5]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자가용 자동차의 유

---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4)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상운송을 허용하도록 하고, 자가용 사용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플랫폼 기반 관광형 이동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여객운송체계와의 관계, 교통질서 및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병도의원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 이양되는 권한 범위 및 특별시조례 규정 사항을 성일종의원안에 비해 축소하여 규정하며, 조례내용이 법령 취지와 상충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데,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 통제 간의 균형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1) 저출생·돌봄·청년지원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38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8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9조(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9조(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0분의 3을 매년 대전충남특별시에 보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3. 대전충남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4. 기부금 및 후원금 5.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제240조(대전충남특별시 미래돌봄특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미래돌봄특구(이하 “미래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40조(통합특별시미래돌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미래돌봄특구(이하 “미래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국가는 미래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41조(충남대전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1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2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2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전충남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제243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4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해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97조에 따른 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45조(의료기반의 확충 등)**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특별시 소재 지역암센터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통합특별시 주민에 대한 암검진과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종합병원의 설치·운영 및 인력·시설·장비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3조(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	**제247조(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조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시·군·구에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4조(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전충남특별시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제245조(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의료사각지대에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의과대학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6조(의과대학 및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의료사각지대에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의과대학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의사과학자 및 의사공학자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과대학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6조(국·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을 설치·운영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제248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9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건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건립·운영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 기반의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치과의료기기 산업의 경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실증 기반은 치과의료기기 전문 인력 양성, 사용성 평가 및 국제 기준 연계 등 치과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실증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1조(국가 치의학 클러스터의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치의학 연구, 임상, 산업 및 인력양성이 상호 연계되는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조성할 수 있다. ② 클러스터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 기반 등 치의학 발전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2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3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전의 충청남도 및 대전광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역시 전역 중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여 출산율 제고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54조(청소년디딤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디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디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햐 한다. ③ 청소년디딤센터의 설치, 조직, 인력 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55조(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각종 시책사업 시행 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24시간 아이돌봄 센터의 이용 대상, 서비스 범위 및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56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통합특별시가 저출생 대응과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부여,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미래돌봄특구 지정 등을 통해 인구정책과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청년 정주여건 조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취약 해소, 공공의료 기반 강화, 지역 내 의료인력 확보 및 정신건강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응급·공공·정신과 분야를 포함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인구·돌봄·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특례	①특별시장은 출산장려·인구부양·돌봄 등 사업 진행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가능	①특별시장은 출산장려·인구부양·돌봄 등 사업 진행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 가능
	②국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특례	①특별시 조례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 설치가능	(좌동)
	②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3%를 보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보조금·출연금 등으로 조성	지자체 자체 재원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 ※국가 보조금 제외
	③저출생대응기금은 저출생 대응 사업에 지원	(좌동)
대전충남특별시 미래돌봄 특구	①특별시장은 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돌봄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미래돌봄특구 지정·운영 가능 ②국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③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해 지원가능	(좌동)
청년일자리 구축 특례	규정X	①국가·통합특별시장은 특화일자리 마련 시책 운영 ②국가는 행·재정지원 가능
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특별시장은 청년 정주를 위한 정책 추진 ②국가는 청년유출을 막기위해 행·재정지원 가능	(좌동)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특례	①특별시장은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운용가능 ②국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다만, 기금 재원에서 중앙정부 지원금·보조금 삭제
주민기본생활 지원 특례	규정X	①농업인·문화예술인·평생학습참여자 등에게 재정지원 가능 ②기금·국고보조금 우선 연계활용
의료기반 확충	규정X	①국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게 비용 우선보조·지원 ②지역암센터의 설치·확충·증축 등에 비용 지원 ③종합병원 개설시 연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특례	①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소재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 필요 경비를 우선지원(의무사항)	(좌동) ※다만, 경비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가능	규정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의료기관 개설 특례	-특별시장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의료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없이 개설 허가 가능	규정X
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 특례	①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내 국립공주의과대학 설치 ②국가는 국립공주의과대학에 행정·재정적 지원	(좌동)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추가설치
국·공립 정신병원 설치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설치 시「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미적용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X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특례	규정X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규정X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②국가는 행·재정적 지원 의무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기반	규정X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글로벌 치과의료기기 교육실증 기반을 구축·운영 가능 ②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가치의학 클러스터	규정X	보건복지부장관은 치의학클러스터 조성가능
공공의료재단	규정X	①국가·통합시장은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가능 ②국가는 행·재정지원 의무
공공산후조리원	규정X	①특별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가능 ②국가·특별시는 행·재정 우선 지원의무
청소년디딤센터	규정X	①특별시장은 청소년디딤센터 설치·운영 가능 ②국가·특별시장은 행·재정 지원의무 ③관련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규정X	①특별시장·시·군·구청장은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무 ②국가·특별시는 행·재정 우선지원 의무
폭력학대대응 신고센터	규정X	①특별시장·시·군·구청장은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설치·운영 가능 ②특별시장·시·군·구청장은 행·재정지원 의무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 및 청년 창업기업 진흥기금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저출생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 내 공주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하고, 국·공립 정신병원이나 국립치의학 연구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수요, 기존 의료·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재정 소요 및 단계적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지역별 의과대학 설립현황>

지역별	입학정원		학교명
	학교수	정원	
서울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	40	울산대(40)
경기	3	120	아주대(40), CHA 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관동대(49), 연세대 원주(93)
충북	2	89	충북대(49), 건국대 충주(40)
충남	3	182	단국대 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	235	전북대(144), 원광대(91)
전남	-	-	-
경북	1	49	동국대 경주(49)
경남	1	76	경상대(76)
제주	1	40	제주대(40)
합계	40	3,058	

※자료: 교육부

2)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 관련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266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대전충남특별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전충남특별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전충남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48조(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9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한다.	**제267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250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1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	**제269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⑤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52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① 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를 지정·취소할 수 있다.	**제27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 지정 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과 문화도시 지정 시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3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제271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4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7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는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전통시장·상점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인프라 확충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아울러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행, 지역문화 진흥 전담기관 및 문화도시·문화산업진흥지구·시설의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통합특별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및 문화산업 성장과 연계되는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례	①특별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의무조항) ②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요청 가능 ③계획수립 시 시·군·구에 통보 ④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재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가능	규정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면제	(좌동) ※다만, 면제의 주체를 정부 및 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감면 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시설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의무사항)	(좌동) ※다만,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문화예술의 진흥	①특별시장은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행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좌동) ※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②특별시장은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가능 요청받은 지방행정기관 장 등은 따라야 함	(좌동) 지방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요청에 따라야하는 의무 규정은 배제
	③국가는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등을 출연·사용·수익·대부할 수 있음	(좌동)
	④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간주	(좌동)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①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및 문화도시 지정 및 취소가능 ②국가는 전담기관 및 문화도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가능	(좌동) ※다만,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문체부장관과 사전 협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①「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문체부장관 승인 없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가능 ②특별시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③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다만,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문체부장관과 사전 협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특례	①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가능 ②국가는 문화산업진흥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다만, 국가재정 투입 시,,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문체부장관 승인필요

성일종의원안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와 성격,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예산 통제 장치의 필요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

요가 있음.

한편, 문화예술 진흥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한병도의원안은 성일종의원안과 달리 진흥계획 수립 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위원회의 성격·업무[46]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성일종의원안에서 특별시장이 ‘관계 지방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례 및 조문 취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46)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3) 박물관·체육시설·카지노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관광·문화 분야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55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에서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설립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3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단서,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전문체육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4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2.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전충남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충남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8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78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84조·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258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7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78조·제79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259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	**제259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지역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60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카지노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8조(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4항,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1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기준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6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63조제1항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63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출연금 2. 제26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261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264조(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용) ①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62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65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제263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통합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제266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제264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267조(백제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백제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이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8조(백제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백제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백제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국립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268조(대전충남특별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구축·개선, 이스포츠대회 육성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8조제6항,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5조(통합특별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평가, 체육시설 설치, 관광산업의 육성·진흥,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법」 특례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운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특별시장에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백제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이스포츠 관련 권한 이양 및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문화·이스포츠 분야의 특화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특례	①특별시장은 「박물관미술관법」에도 불구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함	(좌동)
	②국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X
체육시설 설치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①「체육시설법」 상 문체부장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권한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좌동)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부지면적 제한 권한은 이양대상에서 제외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조례제정 범위 축소
	③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설립 시 대전충남특별시 우선지원	규정X
	④문체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우선지원 가능	규정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관광산업의 육성·진흥	①대전충남특별시가 자율적 관광정책을 시행하도록 국가는 법령정비 ②대전충남특별시는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함 ③국가는 전국단위 관광정책 수립·소비자보호·관광표준 등에 대해 대전충남시 협조요청 가능	(좌동)
관광지 등 조성계획 등 특례	-「관광진흥법」에 불구하고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효력상실·승인·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등 절차 준용	(좌동)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특례	①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우수 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 ②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관광진흥법 특례	①「관광진흥법」상 문체부장관의 일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이양되는 권한 및 조례제정 대상 범위를 축소
카지노업 관련 특례	①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카지노업 허가 가능 ②영업장소·개시시기 등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규정X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특례	①「관광진흥법」에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 ②관련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	규정X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①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좌동)
	②기금의 재원은 국가·대전충남특별시 출연금, 납부금·전입금 등으로 조성	기금의 재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출연금으로 조성
	③문체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를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	규정X
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	①대전충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특별시장이 관리·운용 ②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③특별시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행	(좌동)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특별시장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 운영 가능 ②관련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백제문화예술중심도시 조성	①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백제문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좌동)
	②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국립문화시설 및 관련 교육기관 설립 우선 추진 가능	규정X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이스포츠 진흥특례	①국가는 이스포츠시설 구축·개선, 이스포츠대회 육성 및 국제교류에 대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우선 지원	규정X
	②문체부장관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취소권한,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권한 등을 이양	(좌동)
	③국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좌동)

제정안들은 특별시장이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배제하고, 특별시장의 자체적인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규정인데,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2025.1.31.)에 따라 현재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에 대해 시·도지사의 사전검토 절차가 마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06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20746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성일종의원안은 한병도의원안에 비해 「관광진흥법」상 문체부장관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하고, 국가의 박물관·미술관 등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간 권한 배분의 적정성 및 타 지역과의 정책적·재정적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성일종의원안은 카지노업 허가 권한을 이양하고, 카지노 사업자 매출액 10% 범위를 통합특별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기금에 대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카지노업 투자와 운영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0. 생태자원의 합리적 활용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69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① 특별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충남특별시, 대전충남특별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0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277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27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8조(산림문화·휴양·복지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6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2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4항제4호, 같은 조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14조제1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3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80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경우 제2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대전충남특별시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군·구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6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83조에 따라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75조제1	⑨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74조(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①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전에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1조(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전에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진흥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82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제27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하여 제28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6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제2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7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① 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6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7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4. 제278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276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제28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28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78조(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8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③ 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9조(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6조(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⑤ 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⑥ 사업시행 절차 중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준공검사는 제278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⑦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8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280조(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7조(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28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통합특별시장이 제7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통합특별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7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1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대전충남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전충남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4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통합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충남대전갯벌관리구역(이하“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갯벌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② 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82조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95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과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 제20조,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충남대전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남대전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청정갯벌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갯벌법」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에 관한 사항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4. (생략)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제282조(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갯벌생태계 보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갯벌생태계 관리 및 보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5조(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갯벌관리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갯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갯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갯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갯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83조(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전충남특별시의 갯벌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통합특별시가 상수원, 도립공원, 산림자원 및 갯벌 등 주요 자연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특례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도립공원의 지정·변경·해제, 산림복지·산림교육 및 산림자원 조성·관리,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 전 과정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한편,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와 갯벌 생태관광·복원·교육·국제협력 사업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림·환경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림 및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투자 활성화와 경제 진흥을 연계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특례	①특별시장은「수도법」에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가능 ②기후에너지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결과를 특별시장에게 통지	규정X
도립공원 지정해제 및 축소 특례	-특별시장은「자연공원법」에 불구하고 기후에너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립공원의 지정해제·축소 가능	(좌동)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산림휴양법」 상 산림청장의 일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국가는 행·재정상 지원 가능 ②「산림복지법」 상 산림청장의 일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좌동) ※다만, 국가의 행·재정지원 배제
	③「산림교육법」 상 산림청장의 일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규정X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특례	①「산림자원법」 상 산림청장의 일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②관련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다만, 이양되는 권한의 범위 및 조례제정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배제
	③「임업진흥법」 상 산림청장의 일부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	(좌동) ※다만, 특별시장이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수준에 준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특별시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가능	(좌동)
	②진흥지구 지정 시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야 함	②진흥지구 지정 시 특별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③국가와 대전충남특별시는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책마련	③국가와 대전충남특별시 및 관할 시·군·구는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책마련
	④관련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규정	(좌동)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①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①특별시장은 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특별시장은 해당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좌동)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효과	①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고시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지정·수립·변경·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 ②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함	(좌동)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①특별시장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민간투자자·조합 중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②시행자 지정 시 재무건전성·자금조달력·시행경험 등을 고려 ③시행자 지정한 경우 시보에 고시	(좌동)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①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 ②지정취소시 이를 고시하여야 함 ③지정 취소 시 새로우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으며 종전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좌동)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산림이용진흥지구 실시계획 수립·승인	①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함 ③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④승인신청은 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함	(좌동)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적용의 특례	①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전용허가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좌동) ※다만,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 수 있음
	②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백두대간보호법」에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 완충구역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좌동)
	③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에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 산림보호구역을 자연휴양림 등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좌동)
산림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좌동) ※다만, 지원주체에 통합특별시 추가
	②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좌동)
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 완료 시 특별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특례	①특별시장은 「갯벌법」에 불구하고 갯벌관리구역을 지정 가능	(좌동)
	②갯벌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의견을 듣고 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좌동)
	③「갯벌법」 상 해수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관련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규정	특별시장이 「갯벌법」에 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관리구역지정, 관리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 가능
	④국가는 갯벌관리구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무사항)	(좌동) ※다만, 재정지원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며, 재정지원을 재량으로 규정함
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특례	①「갯벌법」에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를 설치함 ②위원장(특별시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③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	(좌동) ※다만, 심의사항을 축소하여 규정함
갯벌생태계 보전·이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재부장관은 갯벌생태계 보전·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가능	규정X

제정안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산림 관련 정책과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환경보전과 개발 간 균형의 문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양되는 권한의 범위, 조례제정 대상 및 국가의 행·재정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자치단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일종의원안에서는 준공검사 기준·절차를 안 제27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로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준공검사 기준·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일종 의원안의 갯벌생태계 보전·이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달성할 필요성과 재정운용의 건정성 및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통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제정안과 유사하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강원특별법」에서는 산림이용진흥사업 등에 관하여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일종의원안ㅇ은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법」[47]은 도지사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있음.

---

47) **「강원특별법」**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1.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96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우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에 추가배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97조(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국가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금 배분 시 우대하거나, 별도의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규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4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8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5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99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감면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대전충남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국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토지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철도운행 안전, 철도시설 유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86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00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지원법」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7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제301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법」 제2조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해야 한다.
「혁신도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대전충남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02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국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효율성,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03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 경찰, 의학, 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288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과 서로 합의하고 특별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	**제304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89조(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조성면적의 100분의 25 또는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5조(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6조(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7조(도농복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 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통합특별시로 지정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기존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농어촌 특례(대입 특별전형,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경감 등)는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도농복합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특별시 내의 도농복합지역에 대하여는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등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특별시장이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사용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며,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지역의 혁신도시(대전역세권지구·대덕구연축지구·내포신도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성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설치 또는 매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과 민간 투자 유인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의 비교>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우대	규정X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통합특별시에 추가배분
지방소멸 대응기금활용 재정지원특례	규정X	①국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재정지원 가능 ②기금배분시 우대·추가지원
역세권 개발 특례	-특별시장은 「역세권법」 및 「국토계획법」에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좌동)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좌동)
	②특별시장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역세권법」 상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역세권법」 상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토지 중 철도시설에 대해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구분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특례	-특별시장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우선지정 가능	(좌동)
혁신도시개발 특례	①국토부장관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개발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의무조항)	①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부여 및 행·재정지원 추가
	②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 관할 구역 내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②공공기관 우선이전을 적극 추진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정X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공공기관 유치 위한 집적화 특례	규정X	국가는 국방·경찰·의학·과학 집적화를 위해 공공기관 설립 시 특별시장의견 반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매각) 특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과 합의하고 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 가능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특례	①「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할 내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성면적의 25%, 산업시설용지면적의 50%이내 범위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②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시조례로 규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정 가능 ②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례	규정X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 가능
도농복합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규정X	①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농어촌 특례 유지 ②특별시장은 농어촌 특수성 고려한 지원시책마련 ③시·군·구 단위 인구감소지역 지정가능

제정안의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활성화지역 우선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권 확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설치 예외 등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의 무상 임대·사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영향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2. 보칙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90조(공공기관의 협조) ① 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대전충남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8조(공공기관의 협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91조(감독) ① 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제309조(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2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0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3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1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9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들의 보칙은 공공기관의 협조, 감독,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에 따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합특별시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이행력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제정안과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협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특별

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에 규정된 감독,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은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에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23. 벌칙

성일종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제295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75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313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70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296조(과태료) ① 제29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4조(과태료)** ① 제309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행사 및 특별시장의 감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력과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감사 거부·자료제출 불응, 감사활동 방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감사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특별시장이 제정안 제29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정지·철거명령 등 각종 행정처분의 강제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은 제정안과 동일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34